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산사건 전산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체계 구축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13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도산사건 전산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체계 구축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현재 법원의 도산사건 통계 관리 현황	4
다. 검토의견	6
2.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도산절차의 합리적·효율적·통일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도산사

건과 관련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나아가, 입법기관, 금융당국 등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도산 관련 정책과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이 축적한 도산사건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에 도산절차의 합리적·효율적·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산사건 전산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체계 구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이하 “도산사건”이라 함)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28조의2 제1항), 도산사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28조의2제2항),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이하 이 조에서 “도산사건”이라고 한다)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도산사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현행	개정안
	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전산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현재 법원의 도산사건 통계 관리 현황

현재 법원의 도산 관련 통계는 사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전체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 통계를 제공하는 법원통계월보와 이를 연단위로 통합한 사법연감(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즉, 각 도산사건의 처리 현황 및 결과, 처리기간 등이 집계되고 있고, 그 외에 도산사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거나, 도산에 특화된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¹⁾.

1) 김동현,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4. 269~273면.

<개인파산사건 법원 통계월보(20204. 9.13. 추출)>

법원	접수		처리							
	2024년 8월	누계	파산선고전				파산선고후			
			인용	기각	기타	계	종결	폐지	기타	계
서울회생법원	674	6,080	881	13	13	907	94	707	-	801
의정부지방법원	219	1,863	243	5	14	262	57	213	1	271
인천지방법원	340	2,956	449	29	7	485	52	150	-	202
수원회생법원	545	4,089	406	20	21	447	75	430	-	505
춘천지방법원	63	486	48	2	3	53	2	35	-	3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4	165	20	-	-	20	-	24	-	24
대전지방법원	188	1,656	177	5	3	185	33	191	-	224
청주지방법원	86	623	67	9	4	80	-	9	-	9
대구지방법원	345	2,788	398	3	3	404	36	304	-	340
부산회생법원	264	2,336	261	4	3	268	28	135	-	163
울산지방법원	52	576	-	-	-	-	4	62	-	66
창원지방법원	180	1,640	222	-	2	224	36	219	1	256
광주지방법원	152	1,158	100	1	4	105	32	73	1	106
전주지방법원	89	681	56	1	3	60	16	44	-	60
제주지방법원	41	365	55	6	2	63	4	61	-	65
총계	3,252	27,462	3,383	98	82	3,563	469	2,657	3	3,129
금년누계	27,462		26,759	849	756	28,364	4,360	21,343	9	25,712
전년누계	27,821		27,979	1,063	851	29,893	4,628	22,877	8	27,513

<2023년 사법연감 개인파산 사건 통계>

구 분 법 원	금년접수	처 리								
		파산 선고 전					파산 선고 후			
		인 용	기 각	취 하	기 타	계	종 결	폐 지	기 타	계
합 계	41,239	41,221	1,677	1,000	265	44,163	6,972	34,590	14	41,576
서울회생법원	8,859	8,671	204	121	46	9,042	1,000	7,570	-	8,570
의정부지방법원	3,074	2,635	192	69	26	2,922	608	2,070	1	2,679
인천지방법원	4,522	4,604	345	135	22	5,106	1,172	3,694	3	4,869
수원회생법원	5,549	6,371	223	106	48	6,748	1,448	5,116	4	6,568
춘천지방법원	683	746	42	19	16	823	87	760	1	848
강릉지원	224	215	5	4	7	231	12	236	-	248
대전지방법원	2,463	2,883	120	107	24	3,134	281	2,532	1	2,814
청주지방법원	931	982	113	52	3	1,150	92	993	-	1,085
대구지방법원	4,286	3,759	54	92	20	3,925	428	3,434	-	3,862
부산회생법원	3,403	3,014	123	81	15	3,233	580	2,202	3	2,785
울산지방법원	904	998	15	25	9	1,047	157	714	-	871
창원지방법원	2,910	2,842	124	87	10	3,063	246	2,599	-	2,845
광주지방법원	1,829	1,843	64	32	4	1,943	484	1,593	1	2,078
전주지방법원	1,038	1,150	45	56	3	1,254	332	693	-	1,025
제주지방법원	564	508	8	14	12	542	45	384	-	429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사건에 있어 2018년경부터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바(보고서의 ‘e-Form화’), 그로 인해 관련 정보²⁾들이 축적되어 관리되

2) 파탄시기부터 파탄신청시까지의 기간, 파탄원인 관련, 채무자의 채무 구성 관련, 채무 총액의 분포, 연령대 등 통계, 미성년자 자녀 등 관련 통계, 주거형태, 직업, 월수입, 채무자의 재산 등

고 있으나, 정형화된 통계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³⁾.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고 이용·활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산절차를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산 절차에 관한 실증 연구 축적 및 도산 관련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음.

현행 「상업등기법」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⁶⁾ 등에서는

- 3) 개인회생, 일반회생사건의 경우 ‘e-Form화’ 보고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들이 제출한 서식과 개인회생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스캔한 전자기록(이미지 포맷)으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축적되어 있음(법원행정처, 「도산사건 상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22, 김동현,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1. 282~286면 참조)
- 4) 「상업등기법」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견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기사무 처리와 관련한 전산정보자료의 수집 및 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산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와 전산정보 자료 이용·활용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산사건 관련 전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자료 제공 및 이용 절차 등 외에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도산사건 처리에 관

-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한 전산정보 자료 수령 및 이용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⁷⁾ 등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관련 자료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자료의 의의

-
-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와 제공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28조의2제3항에서는 도산사건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처

-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에 따른 도산사건 전산정보자료에는 채무자의 연령대, 가족관계, 주거형태, 직업, 월수입, 채무구성, 재산 등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제재 수준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⁹⁾ 및 유사 입법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2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호)¹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채무자회생법」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 결과를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③ 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도산사건 관련 자료를 집적하여 통계를 구축하고 도산절차의 합리적·효율적·통일적인 운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제28조의2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미 법원이 도산사건 처리와 관련한 제반 전산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자료를 제공받는다든가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고, 제2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은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자체는 공감할 수 있으나, 도산절차의 특성상 수집되는 정보에는 개인의 가족관계, 주거형태, 수입원, 수입액, 개인과 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고, 도

산절차에서 어떤 전산정보를 활용 수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